### ♣ 신영자산운용

#### 변경 대비표

1. 대상 펀드 :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변경 대상 : 집합투자규약 및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3. 변경 사유 :

구분	주요 변경 사항
집합투자규약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일괄신고서	①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②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③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④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4. 효력 발생(예정)일 : 2023년 6월 20일

5. 세부 변경 사항 :

#### ◈ 집합투자규약

 항목	정정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문서 전반	자본시장법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및 시행령		
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개정사항 반영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 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 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 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 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제15조(자산운용지시 등)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집합투자기구 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 **ጵ** 신영자산운용

	T	<del></del>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	
	1. ~ 4. <생략>	1. ~ 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2015년1월1일 이후). 다만, 건전한	경우(2015년1월1일 이후). 다만, <b>법 제6조</b>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49조(금전차입 등의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제한)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있다.
	1. ~ 2. <생략>	1. ~ 2. <좌동>
	3. <신설>	3.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제50조(공시 및 보고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에서
제50조(공시 및 보고 서 등)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때
·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때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때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때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때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생략>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때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때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공시하여야 한다. 1. <좌동>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전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때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공시하여야 한다. 1. <좌동>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전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때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공시하여야 한다. 1. <좌동>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때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공시하여야 한다. 1. <좌동>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사유를
·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전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때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공시하여야 한다. 1. <좌동>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사유를포함한다)
서 등)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전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때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지체없이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공시하여야 한다. 1. <좌동>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사유를포함한다) 3. ~ 5. <좌동>

#### ◈ 일괄신고서

항목	정정사유	변경 전	변경 후
문서 전반	자본시장법 및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삭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 ♣ 신영자산운용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 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 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간이투자설명서-[요약 정보]-투자비용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총 보수•비용 및 동종유형 총보수 <생략>	총 보수•비용 및 동종유형 총보수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요약 정보]-투자실적추이/운 용전문인력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생략>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운용역 관련 정보 업데이트('23년 5월 31일 기준)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기업공시서식 개정사 항 반영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증권모투자신탁( 주식) 투자대상] <신설>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증권모투자신 탁(주식) 투자대상] <기업공시서식개정에 따른 업데이트> 증권대차 거래의 목적 기재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신설>	<기업공시서식개정에 따른 업데이트> 증권대차 거래의 위험 기재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제2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나. 집합투자재산의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신영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 6등급 중 2등급(높은 위험)으로 분류 하였습니다.(연환산 표준편차 : 19.97%) <후략>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신영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고려하여, 6등급 중 2등급(높은위험)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연환산 표준편차 : 16.78%) <후략>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업데이트>
평가방법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주1) ~ (주4) <생략> (주5) ~ (주7) <신설>	• 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업데이트 • 동종유형 총보수 업데이트 (주1) ~ (주4) <좌동> (주5)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클래스포함) 인 경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6)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능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59조의			(주7) '동종유형 총보수'는
지 2부 14, 이의 배본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추기부탕금은 연금저축과 합신 등 세약공제(2014.1.부탁)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 전신설는 ### 전신설을 제공하고 있다. ### 제공하고 제공하고 제공하고 제공하고 있다. ### 제공하고 제공하고 제공하고 제공하고 제공하고 제공하고 제공하고 제공하고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제2부 14, 이익 배본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근로지의 주가부담금은 연금저즉과 합신 다. 과세 (2) 수의자에 대한 과 성 등 6 한에도 중합소독산출세액에서 경제 답안한 금액 중 6 00만원 한 대에도 생기 등 1 전 한 1 전 1 전 1 전 1 전 1 전 1 전 1 전 1 전 1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 근로자의 주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 산하여 당해 연도의 연금저축계 하입 (2) 수익자에 대한 과 중 적은 금액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 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 하입 입약 한도와는 별도로, 연 300만원 한도 나에 퇴직연금제조의 입약 한도와는 별도로, 연 300만원 한도 나에 퇴직연금에 합안하는 금액 함당 당시한 등에 당시한 금액을 당해연도 중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세 입안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 합니다. 상기 연금저축과 합산한 저축불 과 퇴직연금 계취에 납입한 금액을 입약 한도와는 별도로, 연 300만원 한도 산한 금액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내에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중합소득산세액에 됩니다. 단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 서 공제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의 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시한 20만원 이하는 구작에 1합한 금액을 당하면도 중한소득산세액에 합의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 한국의 연금계차에 납입한 금액을 당시한 등에 대해 위한 한도와는 별도로 당해연도 주가 세액공제가 가 능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59조의 경우 등에는 당세연로 수를 방법에 따른 과세체 계의 다양성 연금수병, 일시금수병 등 수형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내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내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내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된다. 일 '국학의 대학을 등 수형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내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바람 장조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 <신설>	• 펀드 총보수를 제외한 기타 발생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가능한 비용의 하위 구성 내역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2) 수익자에 대한 과 제 - 퇴직안금제도의 세계 - 퇴직안금제도의 세계 의 지안금제도의 세계 의 지안금제도의 세계 의 지안금에 대한 과 제계 의 지안금에 대한 공학소독산을세액에서 공제 법 납압 는 금액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과 함산 연조의 연금저축계좌에 보압한 중학소독산을세액에서 공제 법 납압 한도막는 별도로, 연 300만원 한도 내에 퇴직연금에 납압하는 금액 (2015.1.1.0후 납압뿐)은 주가 세액공제 됩니다. 다만, 「소독세병」, 제59조의3 제 리약을 당해연도 중합소독산을세액에서 공제 됩니다. 다만, 「소독세병」, 제59조의3 제 기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 역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 한체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 역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 한체2 등 전원 연금거축계좌에 납압한 금액을 안하으로 생충 5백만원 이하근로소독급액만 있는 경우에는 강생 연조의 연금거축계좌에 납압한 금액 (해당 연도의 연금거축계좌에 납압한 금액 등 6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거축계좌에 납압한 금액을 안하는 경우에는 장사를 보는 일본을 연금계좌의 납한한 금액을 당해연도 중합소독산들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만, 개안증당자산관리 계좌 반기 다양에 계좌 산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압한 경우 이는 당해연도 당합으로 수가 세액공제가 가는 항하니다. 또한, 「소독세병」 제59조의 3 제개왕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연도 급입을 이 10%(300만원 원로)의 급액에 대해 위한 전로와는 별도로 당해연도 수가 세액공제가 가는 항하니다. 또한, 「소독세병」 제59조의 3 제개왕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생략〉 이를 하려면도 학명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명, 일시금수명 등 수명방식에 따라 과세제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된 국무관을 함한 등 수명방식에 따라 과세제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된 국무관을 함한 등 수명방식에 따라 과세제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된 국무관을 함한 등 수명방식에 따라 과세제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된 국무관을 함한 등 수명방식에 따라 과세제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된 국무관을 함한 등 수명방식에 따라 과세제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된 국무관을 함한 등 수명방식에 따라 과세제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된 국무관을 함한 등 수명방식에 따라 과세제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된 국무관을 함한 등 수명방식에 따라 과세제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된 국무관을 함한 등 수명방식에 따라 과세제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된 국무관을 함한 등 수명방 한다는 공략을 함한 등 수명방한 자세한 등 문자관을 함한 등 수명방 한다는 공략에 당하는 공략에 당하는 공략에 당하는 공략에 당한 등 수명방 한다는 공략에 당하는 공략에 당			업데이트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2) 수익자에 대한 과 제 - 퇴직안금제도의 세계 - 퇴직안금제도의 세계 의 지안급제도의 세계 의 지안급제도의 세계 의 지안급제도의 시계 의 지안급제도의 의 지난 상기 연금저축과 합산한 저축물 과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입 인 한도와는 별도로, 인 300만원 한도 선안 금액과 900만원 한은 금액을 합(2015.11.0)수 납입뿐)은 주가 세액공제 됩니다. 다만, 「소득세별」, 제59조의3 제 서 공제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의 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소득 과세표준이 4천 5학만원 한 전도의 연금자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신한 금액 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소도소록급액만 있는 경우에는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언도의 연금자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제당 연도의 연금자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등 6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자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제당 연도의 이라)인 거주자에 대해 답한 금액을 당해면도 중합소득산출세액에 사 공제합니다. 단,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입기 다양 기원이 대해 당한 는 금액은 경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생략> ③ 퇴직연금 수형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계 대당 경제당한 는 금액은 경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생략> ③ 1차에 함께 로 및 제고호 규정에 해당하 는 금액은 경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생략 연금의 입시금수병 등 수원방식에 따라 과세제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퇴직연금-형 발대에 다른 과세체계 기의 다양성 연금수병, 입시금수병 등 수원방식에 따라 과세제제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퇴직연금-형반내다면//pension.fss.or. k)의 "개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 14. 이익 배분	① 세액공제(2014.1.1.부터)	<u> </u>
다. 과세 (2) 수익자에 대한 과 세 - 퇴직연금제도의 세 - 퇴직연금제도의 세 - 퇴직연금제도의 시 등 당해연도 중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상기 연금저축과 합산한 저축물 내에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자리에 발입한 금액을 합니다. 상기 연금저축과 합산한 지축물 내에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 입액 한도와는 별도로, 연 300만원 한도 내에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 (2015.11.이후 납입분)은 추가 세액공제 집되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 서 공제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의 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 (2015.11.이후 납입분)은 추가 세액공제 집에는 당해연도 당해연도 중합소득산출세액에 집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 서 공제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의 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 (여당 연도의 연금제좌에 납입한 금액을 중 600만원 이하일 기급액과 퇴직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함한소득상품세액에 시 공제합니다. 단, 개인증항자산관리 계좌 만기 이후에 계좌 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제좌로 납입한 경우 에는 당해연도 답입금액의 10%(300만) 원 한도의 금액의 대해 위 한도와는 별도로 당해연도 주강소등산품세액에 시 공제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59조의 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주강소는장세액에 시 공제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59조의 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주강소를 생대에 따라 과세제 의 다양성 연급수름, 일시급수렴 등 수렴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인금증합안내(http://pension.fss.or, k가)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	
(2) 수익자에 대한 괴 등 적은 금액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 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저죽계좌에 심 당하는 금액 한다는 상기 연금저죽과 합산한 저죽물 입약 한도와는 별도로 연 300만원 한도 산한 금액)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내에 퇴직연금에 납입한는 금액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2015.11.10후 납입뿐)은 추가 세액공제 금액을 당해면도 총합소득산출세액에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제59조의 제 서 공제합니다. 단, 해당 교세기간의 1형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 연도의 연금제좌에 납입한 금액은 장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해 연도의 연금제좌에 납입한 금액 (해당 연도의 연금제좌에 납입한 금액 (해당 연도의 연금제좌에 납입한 급액을 합산한 금액)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면도 총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해안 전의 연금제주계좌학에 납입한 금액을 하하인된 기계학에 참당하는 금액을 당해면도 중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반기 이후에 계좌 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제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5천 연금 생물을 연금제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5천 연금 수명 방법에 따른 과세제계의 다양성에 연금수명, 일시급수명 등 수명방식에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원들한(내(http://pension.fss.or.k/)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제 - 퇴직연금제도의 합니다. 상기 연급저축과 합산한 지축불 입약 한도와는 별도로, 연 300만원 한도 산한 금액과 약이만원 중 적은 금액의 대체 되지않는다. 다른 12%(지방소득체 포함)에 해당하는 (2015.1.1.이후 납입분)은 추가 세액공제 급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 서 공제합니다. 단, 해당 교체기간의 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 역을 당해연도 중합소득산출세액에 급니다. 막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해 연도의 연급계장에 납입한 금액은 경한 연도의 연급계장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된 연당의 연급계장에 납입한 금액을 하여면의 인대의 급액과 퇴직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한 급액 등 600만원 이내의 급액과 퇴직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장해면도 연도에 전하는 금액을 당해면도 중합소득산환세액에 서 공제합니다. 단, 개단중합자산관리계좌 반기 이후에 제좌 산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급계좌로 납입한 경우 예는 당해면도 입입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금액을 당해면도 주가 세액공제가 가 능합니다. 또한, 「소득체법」 제59조의 3 제1형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 소좌동 (3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제의 다양성 연급수원, 일시급수림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임급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제 합니다. 상기 연금저축과 합산한 저축됨 입액 한도와는 별도로, 연 300만원 한도 는 내에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중합소득산출세액에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33 제 서 공제합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의 학생기를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 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액 한도와는 별도로, 연 300만원 한모 내에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2015.1.1.이후 납입함)은 추가 세액공제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제59조의3 제 1항제고호 및 제2호 가정에 해당하는 3학은 국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약 생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남입한 금액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남입한 금액 600만원 이내)의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제추계좌에 납입한 금액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 제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중합소득산출세액에서 3제합니다. 단, 해당 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중합소득산출세액에서 3제합니다. 단, 개인중합자산관리계좌 반입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중합소득산출세액에서 3제합니다. 단, 개인중합자산관리계좌 반기 이후에 제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금액의 10%(300만원 한도)의 금액에 대해 위한도와는 별도로 당해연도 두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제59조의 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소 작동 1대학에 대해 위한도와는 별도로 당해연도 주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제59조의 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소 작동 1대학에 대해 위한 단와는 별도로 당해연도 수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제59조의 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소 작동 3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되집 연금중합안내(https://pension.fss.or.kr)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7시기 바랍니다. 바라입다. 생각이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7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1년 전체인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1년 전체안내'를 참조하여 1년 전체인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1년 전체인 '연금세계안내'를 참조하여 1년 전체인 '연금세계안내'를 참조하여 1년 전체인 '연금세계안내'를 참조하여 1년 전체인 '연금세계안내'를 참조하여 1년 전체인 '연금세계안내' '연금세계안			
내에 퇴직단금에 납입하는 금액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2015.1.1.이후 납입분)은 추가 세액공제 금액을 당해던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 제 서 공제합니다. 년, 해당 과세기간의 하다군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제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한산한 금액을 한산한 금액을 중한소득산출세액에 서 공제합니다. 단,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만기 이후에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면도 납입금액의 10%(300만원 한도)의 금예에 대해 위한 당하는 급액을 당해면도 부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59조의 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 < 상략> 의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직연금중합안내(http://pension.fss.or. 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1.1.이후 납임분)은 추가 세액공제 임액을 당해연도 중합소득산출세액에 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검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원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원 경제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의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중합소득산출세액에 서 공제합니다. 단,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만기 이후에 개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금액의 10%(300만원 원한도)의 금액에 대해 위 한도와는 별도로 당해연도 참입금액의 10%(30만원 원한도)의 금액에 대해 위 한도와는 별도로 당해연도 참입금액의 10%(30만원 원한도)의 금액에 대해 위 한도와는 별도로 당해연도 추가 세약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59조의 3 제1월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 < 생략> 의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의 다양성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경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지만나 말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경된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경된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대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대라 과세제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대라 과세제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대라 과세제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대라 과세제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대라 과세제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대라 과세제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대라 과세제계가 다양하게 결정된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대라 과세제계가 다양하게 결정된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대라 과세제계가 다양하게 결정된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대라 과세제계가 다양하게 결정된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대라 과세제계가 다양하게 결정된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대라 과세제계가 다양하게 결정된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대라 관계 관련한 관계		·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제59조의3 제 서 공제합니다. 만, 해당 과세기간의 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 역한으로 관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원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급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 연급 계차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한 균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 연급 계차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중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이후에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급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금액의 10%(300만원 원 한도)의 금액에 대해 위 한도와는 발도로 당해연도 국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제59조의 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 <좌동의 금액에 관하 가상하게 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제59조의 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 <좌동> 등 지원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제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내용되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내용기의 가상에게 가나에게 가나에게 가나에게 가나에게 가나에게 가나에게 가나에게 가나			
기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 약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원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원 경우에는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제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신한 금액을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면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서 공제합니다. 단, 개인종합자산관리 제좌 만기 이후에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제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면도 납입금액의 10%(300만원 한도)의 금액에 대해 위 한도와는 별도로 당해면도 추가 세액공제가 가 능합니다. 또한, 「소득세계 제30만원 경우에는 당해면도 추가 세액공제가 가 능합니다. 또한, 「소득세계 제31회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장동>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시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대작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대작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대작 가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대작 가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하(근로소득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 연금 제작 1일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중합소득산출세액에 서 공제합니다. 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이후에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급액의 10%(300만원 한도)의 금액에 대해 위 한도와는 결약을 당해연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제59조의 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좌동>3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직단금,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되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 k)의 "과세제포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면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서 공제합니다. 단,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만기 이후에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면도 납입금액의 10%(300만원 한도의) 금액에 대해 위 한도와는 별도로 당해면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59조의 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좌동>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중합소득산출세액에 서 공제합니다. 만취 게존 한기 이후에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금액의 10%(300만원 한도)의 금액에 대해 위 한도와는 별도로 당해연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제59조의 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좌동>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연구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성연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 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퇴직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독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중합소독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이후에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에는 당해연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금액의 10%(300만원 한도)의 금액에 대해 위 한도와는 별도로 당해연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제59조의 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장동>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시하게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서 공제합니다. 단,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만기 이후에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금액의 10%(300만원 한도)의 금액에 대해 위 한도와는 별도로 당해연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59조의 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전등 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전등 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수 조동> 3 되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교세제고안내"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이후에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금액의 10%(300만원 한도)의 금액에 대해 위 한도와는 별도로 당해연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제59조의 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 < 작동 >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액)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중합소득산출세액에 서 공제합니다. 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이후에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금액의 10%(300만원 한도)의 금액에 대해 위 한도와는별도로 당해연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제59조의 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좌동>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연금수령,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지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서 공제합니다. 단,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이후에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금액의 10%(300만원 한도)의 금액에 대해 위 한도와는별도로 당해연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제59조의 3 제1항제1호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좌동>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연금수령,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서 공제합니다. 단,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만기 이후에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에는 당해연도 납입금액의 10%(300만 원 한도)의 금액에 대해 위 한도와는 별도로 당해연도 추가 세액공제가 가 능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59조의 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좌동>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구시기 바랍니다.			
서 공제합니다. 단,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만기 이후에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금액의 10%(300만 원 한도)의 금액에 대해 위 한도와는 별도로 당해연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59조의 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생략>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 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만기 이후에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금액의 10%(300만 원 한도)의 금액에 대해 위 한도와는 별도로 당해연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소득세법」제59조의 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좌동>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금액의 10%(300만원 한도)의 금액에 대해 위 한도와는별도로 당해연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소득세법」제59조의 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좌동>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연금수령,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있습니다. 따라서되게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있습니다. 따라서되게 되지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kr)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
에는 당해연도 납입금액의 10%(300만 원 한도)의 금액에 대해 위 한도와는 별도로 당해연도 추가 세액공제가 가 능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59조의 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 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좌동>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 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한도)의 금액에 대해 위 한도와는 별도로 당해연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소득세법」제59조의 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생략>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작인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 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무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당해연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소득세법」제59조의 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생략>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 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도소에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기료에 기료되었다. "나용은 동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			
능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제59조의 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생략>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1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생략>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생략>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무시기 바랍니다.			
② <생략>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좌동> ② <좌동>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요세제안내"를 참조하여 다.kr)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② <생략>	
의 다양성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 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 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무시기 바랍니다. 명근세제안내'를 참조하여 다.kr)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       내용은         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         주시기 바랍니다.       r.kr)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한 자세한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 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 주시기 바랍니다. r.kr)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내용은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주시기 바랍니다.r.kr)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         주시기 바랍니다.       r.kr)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kr)의 '연금세제안내'를 참조하여		· ·	
		· ·	
			1.471 - 16-74.

# **ጵ** 신영자산운용

제3부		<생략>	<업데이트>
1. 재무정보		<신설>	[기업공시서식개정에 따른 업데이트]
가. 요약재무정보			-증권의 대여/차입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 내역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주식의 매매회전율
제3부		<생략>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1.		<생략>	<업데이트>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제4부 3.	자본시장법 및	<생략>	<현행과 같음>
집합투자재산	시행령 개정사항	⑨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⑨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_
관리회사에 관한	반영	업무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사항(신탁업자)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나. 주요 업무			여부
(1) 주요 업무			 ⑩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5부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2. 집합투자기구의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다만, 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해지에 관한 사항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가. 의무해지		경우는 제외.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5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3. 집합투자기구의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공시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
나. 수시공시		(www.syfund.co.kr) • 판매회사 및	(www.syfund.co.kr)・판매회사 및
(2)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
		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구국자에게 중도하여야 합니다.   1. <생략>	구국자에게 8고이어야 합니다.   1. <좌동>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그 사유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